

II. 검토의견

달성군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절차 및 기한 >>



<< 정비예정구역 관리방안 >>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민간건축은 허용하되 다만,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 후 잔여지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광역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광역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임.

－ 정비구역지정예정일 : 2012년 2월 1일

－ 3년이 되는 날 : 2015년 2월 1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군수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군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은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기간을 단축하게 하며 재건축 등의 추진에 장애요인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은 3년 이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며 또 그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등 사업의 추진기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풍면 학산 아파트 및 현풍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별다른 추진 계획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불가피하고,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10년 주기로 재수립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등에 대한 추진요인이 발생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그 때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붙임 1)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6월 29일
2. 제 출 자 : 김상영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 보다 신속한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제1호)
- 매년 7월 10일 → 매년 7월 5일
- 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제2호)
- 매년 11월 20일 → 매년 11월 15일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에 따라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개정 2008. 7. 10.),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개정 2013. 7. 30.)에 집회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은 공무원 휴가기간 등과 겹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은 연말 각종 행사 등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집회를 위해 운영기간을 조정하고자 김상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안으로서
-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집행기관인 달성군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5. 26.(의회사무과-1634호)로 집회일정 조정을 위한 의사업무 의견수렴을 한 결과
 - 지난 6. 5.(기획감사실-6105호)로 집회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 없음”을 아래와 같이 동의해 음에 따라

구 분	현재 집회일	조정 집회일	비 고
1차 정례회	7월 10일	7월 5일	
2차 정례회	11월 20일	11월 15일	

-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7월 10일”을 “7월 5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11월 20일”을 “11월 15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토요일·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 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대구광역시 달 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 ----- 범위에서 ----- --.
제4조(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 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집 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른 ----- -----. 1. ----- 7월 5일 --- ----- ----- -----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u>11월 20일</u>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u>토요일</u>·<u>휴무일</u>·<u>공휴일</u>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 ----- -----. 2. ----- <u>11월 15일</u> - -----. 3. ----- <u>토요일</u>·<u>공휴일</u>-----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34조의</u> <u>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u>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1조제1</u> <u>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u> <u>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u>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u>따른</u> ----- -----. ②----- <u>제41조제1</u> <u>항에 따른</u> ----- ----- <u>제127조에 따라</u> ----- ----- ----- -----.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7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법무규제개혁실)
3. 개정이유

○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 과제」, 「중앙정부 발굴 4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 통보」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하는 「전국규제지도」의 부진지표 개선을 위하여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정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가족관계 등록 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동 규칙 제 50조(과태료의 부과)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의 감축(안 제1조)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조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와 인명피해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서는 그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환경부 고시를 반영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강화(안 제5조)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안 제7조)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제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안 제8조)

바.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 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07.8.3.)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졌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안 제9조)

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외형상 ‘무제한 반복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

여 전국규제지도의 주요한 개선지표이므로 대구광역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복심의를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금전납부 의무(가산금)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근거인 「소하천정비법」 제23조를 명시함(안 제13조)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의 군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으나 우리군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보다 더 강화된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상의 기준을 사용(안 제15조)

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로 통보받음에 따라 담배와 관련이 없어도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 치아홈메우기 및 광중합을 이용한 충치 치료의 경우 방문당 수가 기준으로 치과치료의 제한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한 번 방문으로 여러 치아를 예방치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방문당 수가 기준을 삭제하고, 치과 진료수가 기준【별표3】을 개정함(안 제18조)

5.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등)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II. 검토의견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법제처 등 중앙정부의 4대 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지표 개선대상 등 군민의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 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 안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 제1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 제1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안 제1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특정 성비 위촉직 위원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및 성별 구성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의 강화가 필요하고

- 안 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보다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와 인명피해 보상 대상자를 환경부 고시를 인용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였고
- 안 제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1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처리업자와 위탁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산정방법 등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제한한 규정과 제18조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임으로 삭제하였으며
- 안 제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간계곡 등의 특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07.8.3.)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졌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 안 제1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무제한 반복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 반복심의를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 안 제1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모법을 명기하지 않아 법률에 위임 없이 위법하게 주민에 대한 금전납부 의무(가산금)를 부과해 오던 것을 「소하천정비법」 제23조를 명시하여 적법근거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1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의 군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군은 별도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구광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보다 설치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상의 기준을 준용코자 하며
- 안 제1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통보받음에 따라 담배와 관련이 없는 단체도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안 제1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는 치아홈메우기 및 광중합을 이용한 충치 치료의 경우 방문당 수가 기준으로 정해져 치과치료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한 번 방문으로 여러 치아를 예방치료 할 수 있도록 치과 진료수가 기준【별표3】을 개정함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별영향평가 : 원안 가결되었으며
-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
 - 안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안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안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안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때 당연직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위촉직 위원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의 장기위촉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및 부패의 소지로 청렴한 직무수행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00년으로 하되, 0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음.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개정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등 3건의 폐지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및 폐지한다.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람”을 “사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를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제2호의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은 피해”를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3호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은 피해”를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

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한다.

제16조제6호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
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안전처리는 안전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
의 안전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
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
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외에 필
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
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표 2]와 같다.”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을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규칙)”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제8조에 따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스케일링수가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 수가”를 “치아홈메우기(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수가, 불소도포 수가, 광중합을이용한충전치료 수가, 치면세마 수가”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치 과 진 료 수 가 기 준

(단위 : 원)

종 목	진 료 내 용	수 가 결 정 액	
		기 준	수 가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	치면 열구전색	치아당	5,000
불소도포	불소도포	전악 1회	5,000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치료	충치 치료	치아 당	10,000
치면세마	치면활택술	전악	1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후단신설> 1.~ 2.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현행과 같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후단신설>	<u>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사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중----- ----- -----. <u>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1.~4. (생략)	제6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u>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4.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⑤ (생 략)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2.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은 피해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은 피해 4.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의료기관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 기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제5조(보상 제외) ----- -----.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1.~ 4. (생략) <신설> 5. (생략) ⑤ (생략)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현행과 같음) 4의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생략) 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 2. (현행과 같음) 3. ----- ----- ----한다. 4. ----- ----- ----- 내용 -----. 5. (현행과 같음) 6. ----- ----- ----- -----

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수탁업소(시설)나 위탁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내용

마.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1. ~ 5. (생략) ⑤ ~ ⑥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회의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제6조(회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안전처리는 안전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징수) ① (생략)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 정비법」 제23조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안전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후단신설> ④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주차요금) ① ~ ② (생략)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 3. (생략) ③ (생략)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주차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22호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u>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u>를 말한다.	제1조(목적) ----- -----제7조제4항-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 <u>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u>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3】

치과진료 수가기준

(단위 : 원)

종 목	진료내용	수가결정액
스케일링	치석제거	20,000원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틀이용란 충전치료	충치치료	10,000원

【별표3】

치과진료 수가기준

(단위 : 원)

종 목	진료내용	수 가 결 정 액	
		기 준	수 가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	치면 열구전색	치아당	5,000
불소도포	불소도포	전악1회	5,000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치료	충치 치료	치아당	10,000
치면세마	치면활택술	전악	10,000

붙임 3)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 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⑤ 시·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⑥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의의를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외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등)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7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징수과)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조정, 개별법령 개정에서 따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안 별표1, 별표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전문개정 2012.9.21] 되어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 통일된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의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해당사항이 없으며
-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9.21]

붙임 1) 조례안 1부.

2)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율에 따른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부양사실 증명		1통	6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1통	1,000원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1통	1,000원	
· 확정소요량		1통	1,500원	
3. 환지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1,0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1,000원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납세증명		1통	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1,0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1,000원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기타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1통	1,0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	3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3)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외국인등록표등본		1통	300원	
(6)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등 본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1,500원)	
· 열 략		1필지	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5,000원	
2) 갱신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계속100원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1건	600원	
2. 산림관계				
(1) 체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신청		1건	1,0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1,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2,500원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		1건	2,000원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 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 석유대체연료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2)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2,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	척당	1,2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2,2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3,2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5,200원	
(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2,500원	
(5)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1,000원	
(6)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1,000원	
(7)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700원	
(8)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9)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10)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1건	1,000원	
(11)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12)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1,000원	
5.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5)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원	
(6)	적출물처리업자지정	1건	10,000원	
(7)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안경업소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1건	10,000원	
(10)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원	
(11)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신고 및 양수 신고	1건	10,000원	
(12)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10,000원	
(13)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종합유원시설업	1건	6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1건	50,000원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종합유원시설업	1건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1건	15,000원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9)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1건	2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8)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1건	20,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0)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1)	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2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7)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건	10,000원	
(28)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1건	20,000원	
(29)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1건	10,000원	
(30)	영화업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원	
(3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원	
(3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	1건	300원	
8.	공중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1건	6,000원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사항	1건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신고	1건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6,000원	
(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7)	장난감제조업 신고	1건	6,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장난감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9) 기타				
· 영업양수 신고		1건	신규영업허가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함	
9. 부동산 중개업관련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10. 내수면 어업법 관련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3)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11. 화물 운송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신청		1대당	1,5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1대당	1,500원	
12.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건	30,000원	
(2)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3.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4.	어선법 관계			
(1)	증서 등의 재발급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 서영역서)	1건	1,000원	
(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5)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또는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6)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원	
15.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계			
(1)	낚시터업 허가(등록)신청	1건	5,000원	
(2)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신청	1건	5,000원	
(3)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5,000원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붙임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1979. 5. 4 조례 제 615호
(일부개정) 2013.07.30 조례 제2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7.30)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신설 2009.7.3)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 제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발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005. 1. 3)

② 인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 카드로 징수한다(개정2010.3.1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개정 2013.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9.30)(개정 2013.7.30)

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42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7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과)

3. 제정이유

-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 마.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규정(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바.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및 업무의 위탁(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5.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및 제41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4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으로
-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 안 제3조~제10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에 대하여
 - 안 제11조~제16조에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사항을
 - 안 제17조~제23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 안 제24조~제26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 안 제27조~제29조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여서 그 동안 지하수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군의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11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경우

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해당 월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가산금)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군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 취소·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과태료 부과·처분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7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7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설과)

3. 개정이유

가. 2014. 7. 15. 「도로법」의 일부 개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상위 법령의 조항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법령에 합법성을 부여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점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점용료의 반환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7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법률 제12248호, 2014.1.14., 전부개정] [시행 2014.7.15.] 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였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점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제7조에는 점용료의 반환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24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

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⑧ 도시계획도로중 폭 20m미만도로와 군도(단, 폭 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 세입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아.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감면
3.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나.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다.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군수는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군수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법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7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안전방재과)
3.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14.12.30.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 봉사자 및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8조)
- 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운영하는 사항 규정(안 제9조)
- 다.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한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운영사항 등 규정(안 제10조)
- 라.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사항 등 규정(안 제11조·제12조)
- 마.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

-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제20조)
- 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21조·제22조)
- 사. 재난 정보의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안 제23조·제24조)
- 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운영 규정(안 제25조 ~ 제33조)
- 자. 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등 지급근거 규정(안 제35조·제36조)
- 차. 자원봉사자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37조·제38조)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및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그 동안 각 개별조례에 따라 별개로 구성되고 있는 달성군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 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개별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제8조에는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한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운영사항 등을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지역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제20조에는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1조 및 제22조에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23조 및 제24조에는 재난 정보의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을

- 안 제25조~제33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5조·제36조는 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등 지급근거 규정을
 - 안 제37조·제38조는 자원봉사자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1건의 의견이 있어 반영되었습니다.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이의있음(제5조 및 제28조 관련)**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권고사항 반영
 - ⇒ “연임할 수 있다”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S B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대비하거나 기상청 제공 기상정보에 따른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발생단계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6.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10.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T B ㄹ 費樊B噠B費疵

제1절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기관단체장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전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전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방송협의회

(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협력
3. 그 밖에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 협의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군의 국장급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단체·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홍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⑦ 군수는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인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에 주소를 둔 민간단체의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

⑥ 민관협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군수와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의 대표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다른 기관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군의 국·단·소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군의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
 5. 실무반은 군의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교대근무를 위해 2개 근무조로 편성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③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④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대근무와 피해상황 및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 주의보 및 태풍정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대책본부의 실무반 역할 및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 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 및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
3.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책본부 담당관이 된다.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전 3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 등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지역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달성군 재난안전상황실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분석 보고·전파 및 초동조치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4. 사건·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절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

제2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안으로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대구광역시 밖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 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자문단 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U B

제34조(신분변동사항 통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 수변 안전환경 조성 및 인명구조 활동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3. 안전교육을 위한 활동
4. 안전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활동
5.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활동
6.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자원봉사자 활동
7.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

③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른 폐지조례의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16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지역사고수습지원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16조제4항 관련)

재난구분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수습 주관부서	
		국·단·소	실·과
자연재난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풍수해(대설)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지 진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폭 염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가 목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한 파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낙뢰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급경사지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저수지 붕괴	주민복지국	도시과
	황 사	주민복지국	환경과
	산사태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기타 자연재난 피해	당해재난 수습주무국	당해재난 수습주무부서
사회재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민복지국	환경과
	대규모 수질오염	주민복지국	환경과
	산 불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항공기 사고	건설도시국	교통과
	도로터널 사고	건설도시국	건설과
	폭발·대형화재	달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전 력	정책사업단	경제과
	원 유	정책사업단	경제과
	가 스	정책사업단	경제과
	통 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우 편	달성우체국	우편물류과
	대중운송(버스·택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화물운송	건설도시국	교통과
	도시철도	건설도시국	교통과
	농·수산물 유통	주민복지국	농업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소	보건과
	폐기물 수거·소각·매립	주민복지국	청소위생과
	하수·분뇨·폐수 처리	주민복지국	환경과
	식·용수	주민복지국	환경과
	감염병	보건소	보건과
	가축전염병	주민복지국	농업정책과
	사이버 사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수상사고	정책사업단	관광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건축물 등 시설물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승강기 사고	정책사업단	경제과
	공연·행사장 사고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
	유원시설 사고	정책사업단	관광과
	문화재 사고	정책사업단	관광과
	사회복지시설 사고	주민복지국	주민지원과(총괄), 사회복지과
	등산 사고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보행자 사고	건설도시국	교통과
	자전거이용 사고	건설도시국	건설과
	기타 사회재난 피해	당해재난 수습주무국	당해재난 수습주무부서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7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 2명 + α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총괄국장급 공무원
담 당 관	재난총괄부서장
실 무 반	- 근무인원 : 2명+α -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운영기준 >

- 1) 준비단계는 재난총괄부서(근무시간) 또는 당직실(근무시간외)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 2) 재난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7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주의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22명+ α + 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		
근무인원		22명+ α + β
상황관리총괄반 (3+ α)		- 자연재난 총괄부서(1+ 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1+ α), 자치행정과(1)
협업 기능 실무반 (19+ α)	긴급생활안전지원반(1)	- 주민지원과(1)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 환경과(1), 청소위생과(1)
	긴급통신지원반(1)	- 정보통신과(1)
	시설피해응급복구반(8+ α)	- 농업정책과(1), 건설과(1), 도시과(1), 안전방재과(1), 건축과(1), 공원녹지과(1), 문화체육과(1), 관광과(1),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에너지기능복구반(1)	- 경제과(1)
	재난수습홍보반(1)	- 기획감사실(1)
	물자관리자원지원반(1)	- 안전방재과(1), 건설과(α), 회계과(α)
	교통지원반(1)	- 교통과(1)
	의료·방역반(1)	- 보건과(1)
	자원봉사지원·관리반(1)	- 희망지원과(1)
	사회질서유지반(α)	- 달성경찰서(α)
	수색, 구조·구급반(1)	-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
유관기관(β)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 + 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 비상 I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경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국지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15명+ α + 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근무인원		24명+ α + β
상황관리총괄반 (5+ α)		- 자연재난 총괄부서(2+ 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 α), 자치행정과(1+ α)
협업 기능 실무반 (19+ α)	긴급생활안전지원반(1+ α)	- 주민지원과(1+ 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α)	- 환경과(1+ α), 청소위생과(1+ α)
	긴급통신지원반(1+ α)	- 정보통신과(1+ α)
	시설피해응급복구반(8+ α)	- 농업정책과(1+ α), 건설과(1+ α), 도시과(1+ α), 안전방재과(1+ α), 건축과(1+ α), 공원녹지과(1+ α), 문화체육과(1+ α), 관광과(1+ 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에너지기능복구반(1+ α)	- 경제과(1+ α)
	재난수습홍보반(1+ α)	- 기획감사실(1+ 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1+ α)	- 안전방재과(1+ α), 건설과(α), 회계과(α)
	교통지원반(1+ α)	- 교통과(1+ α)
	의료·방역반(1+ α)	- 보건과(1+ α)
	자원봉사지원·관리반(1+ α)	- 희망지원과(1+ α)
	사회질서유지반(α)	- 달성경찰서(α)
	수색, 구조·구급반(1+ α)	-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 α)
유관기관(β)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 + 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 비상 Ⅲ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정보 발표되고 3일이상 호우·대설 전망
 나. 태풍정보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우려시
 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46명+ α + 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		
근무인원		46명+ α + β
상황관리총괄반 (8+ α)		- 자연재난 총괄부서(3+ 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3+ α), 자치행정과(2+ α)
협업 기능 실무반 (38+ α)	긴급생활안정지원반(2+ α)	- 주민지원과(2+ 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4+ α)	- 환경과(2+ α), 청소위생과(2+ α)
	긴급통신지원반(2+ α)	- 정보통신과(2+ α)
	시설피해응급복구반(16+ α)	- 농업정책과(2+ α), 건설과(2+ α), 도시과(2+ α), 안전방재과(2+ α), 건축과(2+ α), 공원녹지과(2+ α), 문화체육과(2+ α), 관광과(2+ 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에너지기능복구반(2+ α)	- 경제과(2+ α)
	재난수습홍보반(2+ α)	- 기획감사실(2+ α)
	물자관리자원지원반(2+ α)	- 안전방재과(2+ α), 건설과(α), 회계과(α)
	교통지원반(2+ α)	- 교통과(2+ α)
	의료·방역반(2+ α)	- 보건과(2+ α)
	자원봉사지원·관리반(2+ α)	- 희망지원과(2+ α)
	사회질서유지반(α)	- 달성경찰서(α)
	수색, 구조·구급반(2+ α)	-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2+ α)
유관기관(β)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 + 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17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1. 가동기준**

- 가.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25명+ α + 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주관부서 국·단·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		
근무인원		25명+α+β
상황관리총괄반 (5+ α)		- 사회재난 총괄부서(2+ 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 α), 자치행정과(1+ α)
협업 기능 실무반 (20+ α)	긴급생활안전지원반(1+ α)	- 주민지원과(1+ α)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α)	- 환경과(1+ α), 청소위생과(1+ α)
	긴급통신지원반(1+ α)	- 정보통신과(1+ α)
	시설피해응급복구반(8+ α)	- 농업정책과(1+ α), 건설과(1+ α), 도시과(1+ α), 안전방재과(1+ α), 건축과(1+ α), 공원녹지과(1+ α), 문화체육과(1+ α), 관광과(1+ 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에너지기능복구반(1+ α)	- 경제과(1+ α)
	재난수습홍보반(1+ α)	- 기획감사실(1+ α)
	물자관리지원지원반(1+ α)	- 안전방재과(1+ α), 건설과(α), 회계과(α)
	교통지원반(1+ α)	- 교통과(1+ α)
	의료·방역반(1+ α)	- 보건과(1+ α)
	자원봉사지원·관리반(1+ α)	- 희망지원과(1+ α)
	사회질서유지반(α)	- 달성경찰서(α)
	수색, 구조·구급반(1+ α)	- 달성·달서·수성소방서 대응구조과(1+ α)
유관기관(β)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 + 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별표 6]

대책본부 실무반 역할 및 기능(제17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 ○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 군수·부군수 등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화상회의 준비·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상황보고서 작성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의회관련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 인명·재산피해 상황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TV 방송 모니터링 ○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대책본부회의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비상근무 단계 결정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안전방재과 자치행정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각 부서, 읍·면 복구현황 파악	환경과 (청소위생과)
긴급통신지원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각 부서, 읍·면 복구현황 파악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서, 읍·면 응급복구 현황 파악	재난수습 주관부서
에너지기능복구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각 부서, 읍·면 복구현황 파악	경제과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대응	기획감사실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물자관리자원지원반	○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방재과 (건설과, 회계과)
교통지원반	○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철도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교통과
의료·방역반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과 (농업정책과)
자원봉사지원·관리반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희망지원과
사회질서유지반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달성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달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유관기관	기관별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7]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1. 피해지원 대상	○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 재난	
2.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의료·방역·방제(防除)·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사항	○ 법 제66조 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	피해 발생위치 :		
	피해 시설명 :		
	피해 물량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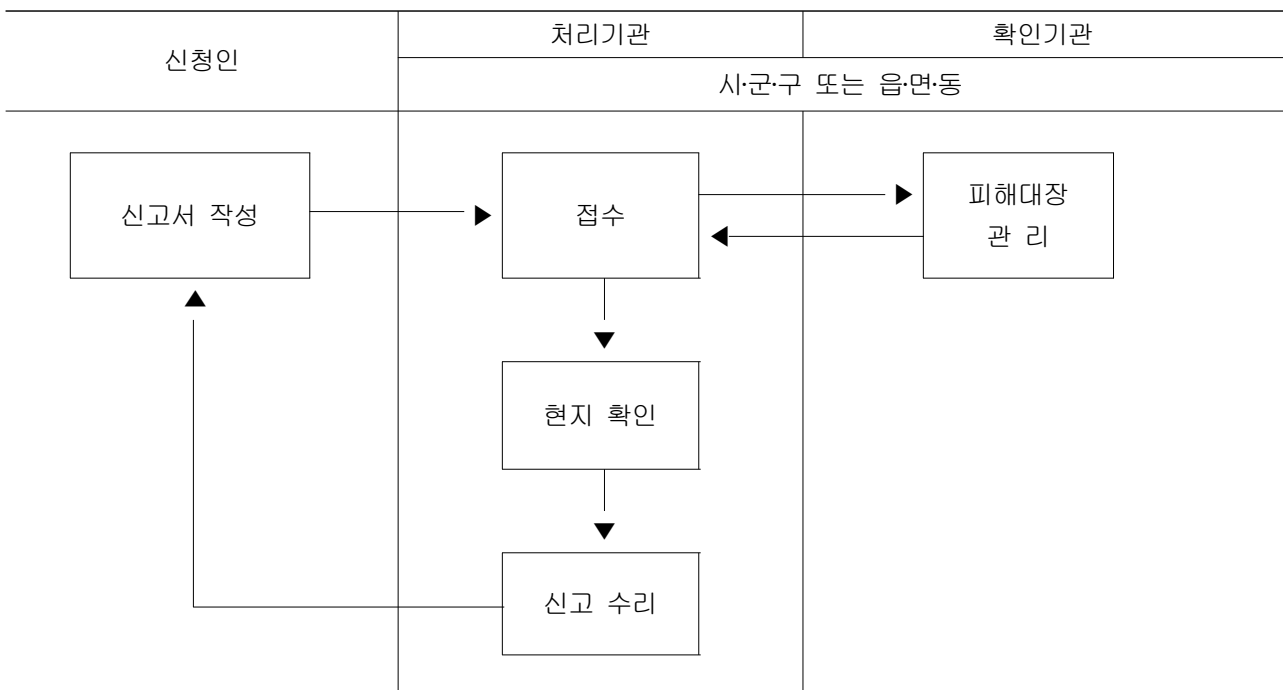
달성군수 또는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피 해 대 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읍 면 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 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	천 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붙임 2)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 ④ 삭제 <2013.8.6.>
-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전문개정 2010.6.8.]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재난방송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 재난방송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6.]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

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8.6.]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6.]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8.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7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안전방재과)
3.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로 변경

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4조 등)

다. 통합지원본부내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안 제5조, 별표)

라. 현장지휘관 지정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체계를 간소화 함(안 제7조)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시행 2014.12.30>”에 따라 현행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며
 - 안 제5조에는 통합지원본부내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규정(별표)하였으며
 - 안 제7조의 현장지휘관 지정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8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제3항 중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를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공보지원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와 같다.” 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의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중 ” 통합지휘소 “를 각각 ”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조 중 “총괄·지휘” 를 총괄·조정 및 지원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1항”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3조” 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2조제2항,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4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제5조 관련)

구분	세부기능 (13개 협업기능별)	주요임무
종합상황 관 리 반	상황관리총괄 기능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 현장 상황보고서 작성 - 재난현장 대응계획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상황 공유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 보 지 원 반	재난수습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대응 - 보도사항, 정보자료 수집 및 확인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전파
현장조치 지 원 반	긴급통신지원 기능 시설피해응급복구 기능 물자관리지원 지원 기능 교통대책 기능 의료방역 기능	- 긴급 통신체계 구축 및 지원 - 군병력, 장비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부족 물자인력 확인 및 지원 보급 -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긴급 교통수단 확보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긴급복구 지 원 반	긴급생활 안정지원 기능 재난현장 환경정비 기능 에너지 기능복구 기능 의료방역 기능 자원봉사관리 기능 사회질서유지 기능	- 재해현장 및 임시대피소 등 비상급식소 운영 지원 - 쓰레기수거, 임시저장소 설치 운영 - 오염물질 차단 및 환경피해 조사 - 전기 및 가스설비 등 긴급복구 지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실시 - 구호물자 확인 및 지원 - 재난현장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

< 비고 >

※실무반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운영하며, 실무반별 임무와 근무인원 등은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u> <u>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u>총괄·지휘</u>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u>총괄·지휘</u>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생략)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생략) <u>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 제4조(<u>통합지휘소</u> 설치·운영) ①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	<u>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u> <u>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u>총괄·조정 및 지원</u>----- -----<u>통합지원본부</u>-----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총괄·조정 및 지원</u>----- -----. 2.(현행과 같음) <삭 제> 4.(현행과 같음) <삭 제> 6.(현행과 같음) <u>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 제4조(<u>통합지원본부</u>-----) 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

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부군수를 장으로 하여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u>통합지휘소</u>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u>통합지휘소</u>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③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통합지휘소</u> 내에 <u>종합상황관리반</u>, <u>현장조치지원반</u>, <u>긴급복구지원반</u>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u>통합지휘소</u>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u>통합지휘소</u>에 참여할 업	관리 조례」 제18조 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 _____ _____. ② 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 _____.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 _____. ②<u>통합지원본부</u> _____. _____ 1. ~ 7.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 내에 <u>종합상황관리반</u>, <u>공보지원반</u>, <u>현장조치지원반</u>, <u>긴급복구지원반</u>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와 같다. <삭 제>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 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 _____
---	--

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u>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u> <u>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u> <u>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u>	<u><삭 제></u>
<u>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u>	<u>제8조(통합지원본부_____)</u> <u>①_____통합지원본부</u> _____ _____ _____ _____통합지원본부 _____, 통합지원본부_____ _____. <u><삭 제></u>
<u>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u>	<u>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원본부_____</u> _____ _____.

② (생략)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u>통합지휘소</u>의 위치)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u>통합지휘소</u>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u>통합지휘소</u>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u>통합지휘소</u>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u>통합지원본부</u>_____ _____. 제14조(<u>통합지원본부</u>____) ①_____ _____ - <u>통합지원본부</u>_____. ②<u>통합지원본부</u>_____ <u>통합지원본부</u>_____.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_____. ②<u>통합지원본부</u>_____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3조_____.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u>통합지원본부</u>_____ _____ _____ <u>총괄·조정 및 지원</u>_____.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_____ _____
---	--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_____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_____.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u>통합지휘소</u>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u>통합지원본부</u>_____ _____ _____.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 ②<u>통합지휘소</u>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u>통합지원본부</u>_____ _____ _____ _____.
제23조(<u>통합지휘소</u> 철수) <u>통합지휘소</u>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u>통합지휘</u>가 필요없게 된 경우, <u>통합지휘소</u>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u>통합지원본부</u> 철수) <u>통합지원본부</u>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_____.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제24조(권한의 위임) _____ _____ <u>통합지원본부</u>_____. 1. ~ 10.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3.12.30 조례 제22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 되는 재난발생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부군수를 장으로 하여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④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조례 제2264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